

담배성분의 표시방법(제16조의2 관련)

1. 표기방법

가.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한글로 표기하고, 그 함유량에 대하여는 타르는 소수점 1자리, 니코틴은 소수점 2자리까지 각각 밀리그램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.

《예시》

- 타르 0.0mg
- 니코틴 0.00mg

나. 2개 이상의 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나타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한다.

다. 개별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하려는 품목들 중 1개 품목 이상의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한다.

2. 표시의 크기

가. 담배의 갑포장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옆쪽 넓이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한다.

나.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.

(품목별 기준/단위: 밀리미터)

광고면적	표준규격	표시의 크기
B ₄ 초과	257×364 초과	34×8 초과
B ₄	257×364	34×8
A ₄	297×210	28×6
B ₅	257×182	24×6
A ₅	210×148	20×4
A ₅ 미만	210×148 미만	20×4 미만

다.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표시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한다.

3. 색상

성분표시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.

4. 글자체

고딕체

5. 표시위치

가.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양옆쪽 중 한쪽에 표시하여야 한다.

나. 잡지·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.